

Deloitte Newsletter



2013 년 10 월

업계 주요 뉴스

회계, Tax, M&A 등 관련 업계의 주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 관세청 역외탈세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

국세청과 관세청은 9월 2일 역외탈세정보 공유에 대한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국세 · 관세 탈루 등 혐의정보에 대해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조사 사례를 공유하며 기관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 협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세청과 관세청의 정기적인 정보 교환 등 교류 강화를 통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및 역외탈세 방지를 가능케 하고 원활한 재정 조달 및 과세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2013 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및 미신고자 점검 계획 발표

최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신고규모는 678 명 총 22.8 조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신고인원 4.0%, 신고금액 22.8%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금년 신고기간 종료에 따라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1 차 기획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며, 역외탈세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금년 중 추가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세법개정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재기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 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재기중소기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요건을 한정하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기간 및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인수·합병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의 입증 사실상 어려워 기술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었던 바, 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 중소기업에 인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가액 또는 인수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함

[Tax 판례] '골드뱅킹' 이용자의 투자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2 구함 32413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S은행과 골드뱅킹 가입 고객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골드뱅킹 투자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면 은행은 이를 금에 투자(통장에 금을 그램 단위로 표기)한 후, 고객의 출금 요구 시 원화 또는 실물 금으로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은행은 이에 대한 이익이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고객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분청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과세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이어야 하는데, 골드뱅킹은 금 가격 변동 그 자체로 수익이 결정되므로 수익금의 분배 성격이 없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골드뱅킹은 실물 금거래에 해당하는데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한 현행 소득세법에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유권해석 및 심판례는 골드뱅킹 거래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과세를 인정하였는데, 본 판결은 이와 상반되는 최초의 법원의 견해표명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Tax 판례]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 시 감정을 배제한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은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2 구함 19977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하는 데에 감정을 배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만 따르도록 한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시가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시행령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만을 인정하는데 대하여,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한 “몇 가지 공식만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모두 적정하게 산출해 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의 다양성과 탄력성을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다양성과 탄력성 확보가 자칫 비상장주식의 담세력을 왜곡하는 것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입법적 결단 하에 법률에 규정을 두어 규율 할 문제이지,

대통령령이 스스로 정해 규율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여 법률에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감정의 방법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임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감정가액을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로서, 향후 상급심 판결의 향방에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시 회사의 규모, 시장상황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 등의 사정이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반영될 수 있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Tax 판례]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주택보증회사 등이 수분양자의 환급요청금액을 지급한 후 시행사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임 (조심 2013 지 0438, 2013.07.16.)

조세심판원은, 시행사와 신탁계약체결로 토지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 받아 취득세 등이 부과된 후 시행사 부도로 청구법인이 계약자 환급금을 지급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문제된 사안에서, 당해 취득은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시행사와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하에 신탁토지 및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양도각서를 징구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당해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부도 아파트를 인수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부과 해왔던 관행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법원 내지 심판원의 향후 판단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한-홍콩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

기획재정부는 9월 11일~13일간 홍콩에서 개최된 한-홍콩 조세조약 제3차 교섭회담에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습니다. 그간 홍콩은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내법의 제약으로 조세조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해당 법의 개정으로 협상이 개시되어 이번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문안은 폭넓은 조세정보 교환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한-홍콩 투자교류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M&A 시장, 국정감사에 촉각

국정감사를 앞두고 M&A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감 결과에 따라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상대적으로 정치권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는 금융권 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 저축은행 매각 문제가 가장 민감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과 건전성을 갖춘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지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을 대부업체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M&A 귀재 이랜드의 질주는 계속될 것인가

이랜드는 2004년 뉴코아 인수를 시작으로 국내외 패션, 레저 기업들을 집어삼키며 단기간에 거대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랜드가 단기간에 성공적인 M&A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성수 이랜드 회장의 일관성 있는 '마스터 플랜'과 이랜드 중국법인이라는 확고한 자금 원천 덕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랜드의 행보에 이상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 M&A를 총괄하는 이랜드월드의 부채상황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이랜드가 당장 빚에 허덕일 상황은 아니지만 국내외 여건상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추가로 공격적인 M&A를 진행하기엔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제2동양 낙인찍힐라" 재계 전전긍긍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좌초한 이후 재계의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실제 재무상황과 무관하게 위기기업으로 낙인이 찍히면 여신 중단 등 회복 불능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일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그룹 재무구조를 직접 설명하고 나선 것은 업계에 나도는 소문을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한계기업은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만 불안심리가 팽배하게 되면 옥석 가리기 없이 우량기업도 부실기업과 한데 묶여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4층~12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Tel. 02-6676-1000 Fax. 02-6674-2114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6676-3800 Fax. 02-6674-8700

© 201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www.deloitte.com/kr www.facebook.com/DeloitteKorea